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70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윤호중·양부남・위성락

문진석 · 김종민 · 정을호

김영환 · 소병훈 · 최기상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발하였거나 중앙은행에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인데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

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은행법」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6. 「한국은행법」</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